

하남시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복지정책과)

제출일 : 2026. 8.

1. 제안이유

-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·운영과 전담조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입법체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상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일치시키고, 통합지원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과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“미충족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·지원 근거 구체화(안 제5조제1항제8호)”

- 1) 현행 조례는 “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의 개발 및 지원”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, 기존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
- 2) “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”으로 구체화함
- 3) 기존 서비스로 지원하기 어려운 새로운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, 돌봄 공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나. “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체계 정비(안 제11조, 제12조 및 제12조의2)”

- 1) 현행 조례에는 통합지원협의체의 회의 소집, 의결정족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, 전문기관의 당연직 위원을 특정 기관명으로 규정하고 있어

제도 또는 기관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. 또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의 다양한 주체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- 2) 통합지원협의체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됨을 명확히 하고, 특정 기관명으로 규정된 당연직 위원을 전문기관의 하남시 지역 담당 지사장으로 정비하며, 지역사회 관련 단체·조직의 구성원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위원의 범위를 확대함. 아울러 통합돌봄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규정하고, 정기회의 개최 횟수, 임시회의 소집요건 및 회의의 개의·의결정족수를 신설함.
- 3) 협의체의 구성과 회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반을 보완함으로써, 민·관 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협의체 운영의 대표성·연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유정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,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통합지원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은 기존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·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, 통합지원협의체의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, 간사 지정과 정기·임시회의 소집 요건 및 의결정족수 등 협의체 운영기준을 신설하여,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협의체 운영의 대표성·연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- 검토 결과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통합지원체계의 법적 근거와 운영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,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